

의안번호	2220726
의 퇴 인	김종양의원
회 답 일	2026.9.2.
추계번호	26B4116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의3 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특례)	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. 1.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2.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·공익시설·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3.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, 화장실,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. 이 경우 「물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)
1	안 제8조의3 (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특례)	×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, 마을공동시설·공익시설·공동시설·공공시설 및 체육시설과 그 이용 편의를 위한 휴게실·화장실·관리실 등의 시설 건축·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 공동이용시설, 공공시설, 체육 시설 등의 건축·설치가 가능해지고,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이 해당 시설을 건축·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, 현행법 제7조제1항1)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전국 277곳으로, 개정안에 따라 시설의 건축·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허용되는 시설의 구체적인 종류·규모 및 건축·설치 건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, 현시점에서 해당 사항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1) 제7조(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)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(이하 “상수원보호구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